

일본의 고령자 학대 「정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Systematic Review를 통해서—

任 貞 美*

(e-mail: jekljm@hanmail.net)

目 次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를 둘러싼 논쟁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발전적인 고령자학대 정의를 위한 제언
-

I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고령자 케어의 수준 및 그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자학대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筒井等, 2002), 2006년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高齢者虐待の防止, 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이하, 고령자학대방지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은 「고령자의 존엄유지 및 학대예방」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존엄유지를 위한 핵심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학대 정의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萩原, 2009 ;

* 도시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일본학술진흥재단 특별연구원DC2

中村, 2012). 예를 들어, 萩原은 고령자학대방지법의 목적과 이념이 불명확하고 학대의 종류를 단순히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또, 후생노동성의 학대방지 매뉴얼도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모호하다는 점을 과제로 보고한 바 있다. 中村은 학대방지법이 학대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고 5가지의 학대행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존(gray zone)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학대방지법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고령자의 존엄유지와 학대예방에 있어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마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萩原, 2009). 이러한 학대정의의 불확실성의 문제는 일본은 물론이고 해외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Tatara(1995)는 고령자학대의 정의와 분류가 각 나라별, 법률별, 연구자별로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일치된 학대정의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고령자학대의 정의가 없고, 따라서 각 나라별 학대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Decalmer et al., 1993 ; Bonnie et al., 2003).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령자학대 정의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정의이다²⁾. WHO(2008)는 고령자학대를 “일회적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적절한 행위의 결핍,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고령자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HO의 정의는 고령자 학대연구를 위한 학대정의의 국제기준을 제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가해자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 ‘적절한 행위의 결핍’ 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 제시한 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예를 들어, 현장에서의 활용방법)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6년에 제정된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³⁾에서도 공통

2) WHO의 고령자학대 정의(http://en.wikipedia.org/wiki/Elder_abuse#cite_note-1, 2015.4.22.)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 있음.

3)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제2조)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양호자(養護者, carer,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와 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신체적학대, 방임, 심리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의 5가지 유형으로 고령자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학대를 고령자의 신체에 외상(外傷)이 발생하고 혹은 발생될 염려가 있는 폭행을 가한 것, 방임을 고령자를 쇠약하게 하는 현저한 감식 혹은 장시간의 방치, 돌봄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것. 심리적학대를 고령자에 대한 현저한 폭언과 현저한 거절적 대응, 그 외 고령자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행하는 것, 성적학대를 고령자에게 외설행위를 하는 것, 경제적학대를 고령자의 친족 및 주 돌봄자가 당해 고령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 그 외 해당 고령자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임을 “고령자를 쇠약하게 하는 현저한 감식(減食) 혹은 장시간의 방치, 돌봄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저한 감식’이 어느 정도의 감식을 말하는 것인지 ‘장시간의 방치’가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것인지 그 내용과 범위가 애매하다. 한편, 심리적 학대를 “고령자에 대한 현저한 폭언과 현저한 거절적 대응”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역시 ‘현저한’의 범위와 수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내용과 범위가 추상적이다.

또, 법률상의 고령자학대 정의는 그레이존(gray zone)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나 부적절한 케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山田, 2008), 이는 학대 예방 및 학대방지법 본래의 목적(고령자의 존엄유지)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渡部(2008)는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학대의 본질에 대한 내재적 개념, 다시 말해 학대의 총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지 않은채 외재적인 학대의 개념(학대의 유형화)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모호하고 불확실한 고령자학대방지법의 정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정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학대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및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萩原, 2009). 둘째, 공통된 학대인식의 형성을 방해하므로 전문가마다 서로 다른 개입이 이루어지고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Kosberg et al, 2003; 萩原, 2009). 셋째, 증거가 남기 쉬운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고령자학대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학대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된다(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等, 2008). 이와 같이 학대 정의의 불확실성과 추상성의 문제, 학대의 내재적 개념화(내재적 개념정의)의 부재라고 하는 문제들은 고령자학대방지법은 물론 연구자들의 학대정의에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고령자학대를 뜻하는 구체적인 개념과 정의에 대한 탐색 없이 연구자의 시점과 연구의 목적에 맞춰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학대 분류를 사용해 왔고, 이는 오히려 학대연구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萩原, 2009).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대 정의를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 역시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먼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 학대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고령자학대 정의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즉, 무엇이 학대이며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수 있는지 학대

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에 논의된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일본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고령자학대 연구는 학대 실태조사, 학대 인식조사, 학대의 발생요인에 대한 조사들이 중심이 되어 왔고, 2014년 1월을 시점으로 Cinii를 이용하여 검색한 학대정의와 관련된 총설적 연구는 加藤(2000), 坂田(2001), 筒井等(2002), 萩原(2009), 中村(2012)의 연구에 불과하다. 특히, 정의와 관련된 연구는 고령자 학대연구의 동향을 소개하거나 학대정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 부적절한 케어의 개념을 소개하거나 학대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기존에 논의된 학대정의의 내용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교하거나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아틱 리뷰(systematic review)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현재까지 사용된 고령자학대 정의에 관한 내용과 특징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고령자 학대 정의를 위해 필요로 한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시스템아틱 리뷰(大木, 2013)는 체계적인 총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완결된 하나의 성과물(논문)이며 주된 목적은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얻는 것, 학술적인 도달점을 구체화하는 것, 자료를 통합하고 현재까지 거론된 에비던스(evidence)를 요약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와 동등한 과학적 연구방법의 하나라고 본다(大木, 2013).

II .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를 둘러싼 논쟁

일본에서는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고령자학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도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養護者)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실태조사(平成24年度 高齢者虐待の防止, 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対応状況等に関する調査結果)」를 살펴보면 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고령자학대가 15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건(2.6%)이 증가하였고, 가정 내 학대의 경우 15,20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97건(8.4%)이 감소했다(厚生労働省, 2013).

4) 「양호자(養護者)」는, 고령자를 실제로 양호(케어)하는 사람을 뜻하며, 개호시설종사자(養介護施設従事者) 이외의 사람을 뜻함(高齢者虐待防止法 第2条2項).

학대방지법의 학대 정의 및 분류에 근거하여 집계된 일본의 고령자 학대의 실태는 가정 내 학대와 시설 내 학대 모두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심리적 학대 순이었다. 반면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等(2008)은 학대방지법의 5가지 학대유형 외에 신체구속을 포함해 고령자학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신체구속은 법률상의 학대로서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학대에 준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심리적 학대의 유형이 가장 높고 이어서 신체적 학대, 방임, 신체구속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학대 정의에 따라 그 실태가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Valentine(1984)은 정의의 초점 및 제한점이 법적인 측면, 의학적 측면, 사회사업적 측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이소희 1988: 21의 재인용). 다시 말해,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한 학대조사는 법 규정에 근거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고의적인 가해자의 행위(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학대의 실태를 집계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결과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山田, 2008). 반면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等は 학대를 사회사업적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신체적 학대 보다 보편적으로 발생이 용이(用意)한 심리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에 정의된 고령자 학대는 그 범위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국희(1999)가 언급한 것처럼 학대를 신체적 학대 같이 매우 극한적인(특수한) 행위로 과장해서 이해할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고령자학대로 집계되지 않은 무수한 학대적 행위, 인권침해행위가 잠재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보고되고 있는 고령자학대의 실태와 현실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는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대적 행위 등을 보다 현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신체적학대나 심리적학대 등 제한적인 학대행위를 나타내는 고령자학대(abuse)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武田, 2010; 中村, 2012). 학대 정의가 협소하면 첫째, 학대의 발생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渡部, 2008). 둘째,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학대적 행위를 간과하게 되며 이는 학대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과 동일하다(中村, 2012). 셋째, 협소한 학대 정의는 학대발생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하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비신체적 학대의 경우, 관계갈등이나 질병의 문제로 간주되기 쉽다(James et al., 2010).

萩原(2009)는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의 학대정의에는 여타 아동학대방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대는 인권침해”라고 하는 규정이 없고, 목적 및 대응책의 관계 역시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平田가 언급

한 것처럼 고령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광의의 정의(신체적, 심리적, 방임, 경제적, 성적학대 외 인격적 학대를 포함)와 협의의 정의를 뜻하는 2단계의 정의를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광의의 개념으로, 강제권한을 행사해야 할 경우는 협의의 개념으로 학대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武田(2010)는 학대라는 용어 대신 “부적절한 처우”라고 하는 상위개념을 설정한 뒤 “학대, 방임, 그 외(고령자의 존엄을 상치 입히는 행동들)”의 하위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형태로 정의의 불명확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또 방임을 의도적 방임과 비의도적 방임으로 구분했다. 몇몇 연구자는 방임이라는 개념에 자기방임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학대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령자학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우국희, 1999; Bonnie et al., 2003).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는 문제의 정확성을 결여시키고(Kosberg et al., 2003),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하는(예를 들어 사기를 학대로 해석하는 등 다른 일반 범죄와의 구별이 없어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中村, 2012).

그렇다면 과연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시스템아틱 리뷰를 이용한 문헌연구를 통해 학대정의의 내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대정의의 발전적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선행문헌 검색방법

검색방법으로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가 운영하는 학술논문과 도서, 잡지 등의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Cinii(2014년 1월 기준)를 이용했다. 키워드로는 「고령자」 「학대」 「정의」를 사용하고 AND검색을 이용했다. 「학대」와 유사한 용어로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케어」 「부적절한 개호」 「maltreatment」 「mistreatment」가 있다. 따라서 「학대」라는 용어 대신에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케어」 「부적절한 개호」 「maltreatment」 「mistreatment」를 이용해 추가 검색한 결과를 문헌검색 수에 합계했다. 예를 들어, 「고령자」 「학대」 「정의」의 검색결과에 「고령자」 「부적절한 관계」 혹은

「고령자」「부적절한 케어」를 키워드로 넣어 검색한 결과를 추가했다. 또 이렇게 검색한 문헌의 참고문헌으로부터 아래의 적격조건에 포함되는 문헌을 추출해 추가 검토했다. 또 학술논문과 리뷰논문을 포함한 모든 문헌을 본 조사의 검토대상으로 한다.

2. 문헌의 적격조건과 제외기준

수집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살펴본 후 고령자학대 정의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학술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고령자학대가 아닌 아동학대·장애인 학대에 관한 연구, 일본국내 이외의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복된 문헌, 연구보고서, 책은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부터 제외했다.

3. 분석방법

검토대상이 되는 문헌의 학대정의에 관한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각 문헌들을 비교 분석했다. 먼저 大木(2013:76-85)의 시스테마틱 리뷰에 관한 문헌통합의 순서를 참고로 각 연구의 연도별 추이에 따라 학대정의의 인용, 피인용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류, 정리했다. 이를 통해 학대 정의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한 시계열적 특성을 살펴보고 학대정의에 관한 연구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대상이 된 연구의 선고과정

연구대상이 되는 선행논문을 선별하기 위해 Cinii(2014년 1월 기준)에 「고령자」「학대」「정의」라는 3개의 키워드를 넣고 AND검색을 실시한 결과 24건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또 「학대」와 유사한 용어인 「부적절한 관계」「부적절한 케어」「부적절한 개호」「maltreatment」「mistreatment」를, 예를 들어 「고령자」「부적절한 관계」혹은 「고령자」「부적절한 케어」⁵⁾

5) 「고령자」「학대」「정의」처럼 학대와 유사한 용어들을 「고령자」「부적절한 관계」「정의」혹은 「고령자」「부적절한 케어」「정의」와 같이 세 개의 키워드로 동일하게 조합해 키워드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를 키워드에 포함시킬 경우

등으로 조합해서 추가 검색한 결과, 새롭게 22건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총 46개의 문헌을 대상으로 「2. 문헌의 적격조건과 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본 연구의 검토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문헌은 17건이다. 제외된 문헌은 총 29건으로, 14건은 고령자학대 정의와 관련이 없고, 9건은 학술논문이 아니었다. 중복된 문헌은 6건이었다. 또 17건의 문헌에 인용된 참고문헌으로부터 학대정의를 이용한 11건의 문헌이 추가로 선별되었으며, 총 28건의 문헌을 본 연구의 최종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고령자학대 정의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28건의 문헌⁶⁾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고령자학대 정의에 관한 연구과제」 13건, 「고령자학대의 실태에 관한 문헌」 7건, 「고령자학대의 개입방법에 관한 문헌」 4건, 「학대의 원인에 대한 문헌」 3건, 「연구방법에 대한 문헌」 1건이었다.

2. 대상이 된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최종 검토대상으로 선별된 28건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최초로 고령자학대를 소개한 것은 1987년의 金子의 「노인학대」였지만 학대의 실태와 특징을 측정하는 등 실증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94년 田中の 조사이며, 2000년부터는 고령자학대에 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건의 문헌을 3가지 시기로 구분하면, 1995년에서 1999년까지가 7건, 2000년부터 2005년까지가 8건,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가 13건이다.

연구디자인은 문헌연구가 20건, 양적연구가 6건, 질적연구가 2건이었다. 하지만 「고령자」 「학대」 「정의」를 키워드로 문헌검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정의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적었고, 주로 실태조사나 학대의 발생요인·예방을 위한 지원책 등 학대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보였다.

3. 일본의 고령자학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대 정의」

일본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령자학대 정의를 정리하기 위해 고령자학대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 28개의 문헌 중, 중복 사용된 학대정의를 중심으로 연도별

추출되는 문헌이 0건이었으므로 「정의」를 제외한 두 개의 키워드(예를 들어, 「고령자」 「부적절한 관계」 등)로 조합한 뒤 추가문헌 22건을 추출했다.

6) 본 연구의 검토대상이 된 28건의 문헌에 *를 표시했다.

로 그 개념과 특징을 개관했다 <표 1>. 그리고 각 연구자별 정의의 특징을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1) 고령자학대 개념 도입(1987년부터)

이 시기에 대표적인 고령자학대 정의로는 1987년 처음으로 일본에 고령자학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金子(1987)의 정의를 들 수 있다. 金子는 고령자학대를 「당사자인 노인에게 이유 없이 견뎌내기 힘든 고통이 동반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를 통해 기존에는 학대로서 인식하지 못했던 고령자에 대한 행동제한, 무시, 착취, 협박 등을 고령자 학대로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사인 金子의 학문적 배경과 경험에 근거해 고령자 학대의 분류가 정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학대 등 고령자학대의 사회구조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94년 田中에 의한 학대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고령자 학대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였다.

2) 고령자학대의 5가지 유형과 학대유형의 다양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994년 田中은 고령자학대에 관한 기초연구로 평가되고 있는 최초의 고령자학대에 관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田中은 학대정의의 국제적 이해와 학대연구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Wolf et al(1989)의 정의를 미조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고령자학대를 ①신체적 폭력에 의한 학대, ②심리적 손상을 주는 학대, ③성적폭력에 의한 학대, ④일상생활에 관한 돌봄의 방기, 거부, 태만에 의한 학대, ⑤경제적 학대로 제시하고 있다.

田中の 정의는 이후 많은 학대연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학대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잠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대의 대상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비의도적인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매우 협소한 정의이다.

이후 高崎(1996), 大塩(1997), 寝たきり予防研究会(2002)에 의해 자기방임 등의 학대분류가 추가되었고 각 연구자에 의해 새롭게 정의와 분류가 제시되었다. 특히, 고령자의 존엄을 손상시키거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다 넓은 의미의 고령자학대로 간주해야할 필요성(大塩, 1997; 田中, 1998; 坂田, 2001; 寝たきり予防研究会, 2002; 上村等, 2003)이 제기되면서, 점차 학대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학대 정의의 법제화 이후, 학대방지법에서 대응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 부적절한 케어에 대한 검토 (2006년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되고 고령자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고령자학대방지법에서는 고령자학대를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양호자(養護者)와 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 방임,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로 정의하고 있고, 학대연구에 있어서 5가지의 학대유형을 공식화(公式化)했다. 이 법률은 가정 내 학대와 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시설 내 학대를 학대의 발생장소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점이 여타 정의와는 다르고 개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학대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고령자학대방지법의 학대정의를 생명과 관련한 긴급한 경우만을 학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개호자의 부담 및 친근한 인간관계에 근거한 인권침해행위 등을 학대로 칭하는 것은 곤란하다(武田, 2010; 萩原, 2009; 中村, 2012). 예를 들어, 전국규모의 대표적인 고령자학대 실태 조사를 행한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等(2008)은 고령자학대방지법의 정의(분류)에 「긴급한 경우 이외의 신체구속」을 추가하였고 학대방지법만으로는 대응 불가능한 신체구속 등의 부적절한 케어에 관한 실태파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2006년 이후 일본의 고령자학대에 관한 연구는 학대방지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그레이존(Gray zone)에 있는 부적절한 케어의 위해성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고령자학대: abuse」와 「부적절한 케어, 부적절한 취급: maltreatment」 등의 의미가 유사한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했다(難波等, 2006; 渡部, 2008; 萩原, 2009; 加賀谷等, 2010; 武田, 2010; 中村, 2012). 이는 즉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等이 언급한 것처럼, 학대예방은 학대 행위만에 특화된 대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병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학대정의 및 분류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2)3)의 시기를 통틀어 고령자학대 정의의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는데, 먼저 고령자학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해행위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학대를 고령자학대방지법에서 정의된 신체, 정서적 학대를 뜻하는 특수한 상황, 사건으로 파악하느냐 혹은 인권침해나 범죄행위와 같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보편적인 생활상의 과제로 파악하느냐는 점이다.

또,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고령자 학대정의를 주로 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대의 개념을 소개하거나 5가지의 학대유형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의도적 방임, 무의도적인 방임, 의도적자기방임, 무의도적 자기방임(大塩, 1997; 寝たきり予防研究会, 2002)과 같이 학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학대를 파악하려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2006년 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연구자들은 학대방지법을 통해 대응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에 착목해 학대를 도덕적인 범죄행위, 고령자를 배제하는 행위(杉井, 2007; 萩原, 2009; 中村, 2012)와 같이 다양한 시점에서 보다 폭넓게 구조화하고 개념화하려는 작업을 실시했다는 점 역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자학대에 관한 총체적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문헌은 적었고 그 근원이 되는 학대의 개념, 범주 및 분류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 일본의 고령자학대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자학대 정의

연구자	학대정의	학대분류	정의의 특징
金子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인 노인에게 이유 없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동반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것 ■ 제공해야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 ■ 정신적인 학대 ■ 물질적인 것 ■ 사회적 학대 ■ 자기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의식, 고령자가 그 상황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학대해석의 포인트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또 학대를 상황 및 사례별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음. ■ 「이유없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동반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은 추상적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기 힘들. ■ 臼井等(1999),金子等(2000),筒井等(2002)의 연구는 金子의 정의를 인용함.
田中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lf et al(1989)의 정의를 사용. ■ 고령자학대는 친족 등 주로 고령자와 무언가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의해 고령자에게 가해지는 행위로, 고령자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일상생활에 걸친 돌봄의 방기, 거부, 태만에 의해 발생됨. ■ 개호자의 몰이해, 무지에 의한 비의도적 학대는 학대의 대상에서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폭력에 의한 학대 ■ 심리적손해를 주는 학대 ■ 성적폭력에 의한 학대 ■ 개호등 일상생활상에서의 돌봄의 방기, 거부, 태만에 의한 학대 ■ 경제적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학대연구에서 田中の 정의를 사용하고 있고, 고령자학대를 신체적학대, 심리적학대, 경제적학대, 성적학대, 방임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음. 부적절한 환경에 관한 시설 내 학대의 특수성을 학대정의에 반영하지 않음. ■ 大國等(1997), 臼井等(1999), 金子等(2000), 筒井等(2002), 田中(1995)의 연구에서 인용함.
高崎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아메리카법(高齡アメリカ法)第144條를 인용. ■ 학대는 의도적인 상해의 행사, 부조리한 구속, 협박 혹은 잔혹한 벌을 주는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상처, 고통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학대 ■ 성적학대 ■ 정서적·심리적학대 ■ 방임·방치 ■ 금전적·물질적 착취 ■ 그 외: 자학·자기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를 의도적인 상해 혹은 잔혹한 벌, 구속에 의한 행위로 그 대상을 한정함. 따라서 학대정의가 매우 협소함. ■ 高崎(1995a), 高崎(1995b), 臼井等(1999), 谷口(2000), 萩原(2001), 上村等(2002), 上村等(2003)은 고령아메리카법(高齡アメリカ法)第144條를 인용.
大塩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학대·방임은①고령자의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 타인과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 ②생활의 질은 신체·정신·심리·정서, 사회생활면, 법률·경제면의 다양한 한 영역에 해당됨. ③그 결과, 생활과 건강상태의 악화를 초래함. 건강은 심신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건강(WELL-BEING)도 포함됨. ④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님. ⑤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과거의 사건에 대한 교환적 형태의 학대가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학대 ■ 성적학대 ■ 금전적·물질적학대 ■ 언어적학대 ■ 심리적학대 ■ 의도적 방임 ■ 무의도적 방임 ■ 의도적 자기방임 ■ 무의도적 자기방임 ■ 그 외의 학대·냉랭한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학대라고 칭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학대를 파악하려고 시도함. 학대를 생활의 관점에서 검토하려는 점은 새로운 시점이며 의미가 있음. 다만, 고령자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학대행위 및 생활과제를 보다 현실적·실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자기방임을 학대로 간주하는 이유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寝たきり予防研究会(2002), 筒井等(2002)의 연구에서 인용.
田中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는 기본적인 인권의 억압·착취임. 사회적 고립과 자유의 속박·억압에 해당하는 행위, 자학 혹은 자기방임도 학대에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폭력에 의한 행위 ■ 성적폭력에 의한 행위 ■ 심리적 상해를 주는 행위 ■ 경제적 학대 ■ 개호등의 일상생활상의 돌봄의 방기, 거부, 태만에 의한 학대 ■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田中(1994)의 정의에 없었던 자기방임(자학)을 추가함. 학대를 인권침해, 억압 등으로 포괄적으로 파악함.
安部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를 부적절한 케어라고 하고 부적절한 케어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개인적학대가 아니라 고령자를 재택에서 개호하고 있는 가족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를 부적절한 케어라고 한 것은 당시의 케어 수준을 생각할 때 선구적이지만 가정 내 학대에 한정해서 살펴봄.

<표 1> 일본의 고령자학대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자학대 정의(표1의 계속)

연구자	학대정의	학대분류	정의의 특징
坂田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는 가정 내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가정 내 힘(권력)의 역전에 의해 약자인 고령자에게 유형·무형의 함(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기회를 이용해 신체적 및 심리적인 고통을 주거나 방임(放任)하거나 금전적·물리적 손상을 주는 것으로 고령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학대 ■ 심리적학대 ■ 방정적학대 ■ 경제적학대 ■ 자기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를 가정 내 학대로 대상을 한정함. ■ 자기방임의 분류를 추가하는 의미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大塩의 과제와 동일).
寝たきり予防研究会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塩의 분류를 이용함. ■ 학대는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이며 그 결과로서 고령자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존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학대 ■ 성적학대 ■ 언어적학대 ■ 심리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정적학대 ■ 의도적 방임 ■ 무의도적 방임 ■ 무의도적 자기방임 ■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를 고령자의 인권침해행위로 폭넓게 파악하고 고령자 본위의 시점·권리를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러나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대라고 칭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오히려 Hirst等(1986)가 지적한 것처럼 학대의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해버릴 가능성이 있음(Decalmer et al의 제언용, 1998:11). ■ 筒井等(2002)의 연구에서 인용.
高齢者虐待防止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양호자와 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①「신체적학대: 고령자의 신체에 외상을 가하고 혹은 외상을 가할 염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②「방정적학대: 고령자를 쇠약하게 하는 현저한 감식 혹은 장시간의 방치, 양호를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것」 ③「심리적 학대: 고령자에 대한 현저한 폭언 혹은 현저한 거절적인 대응, 그 외 고령자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하는 것」 ④「성적학대: 고령자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것 혹은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 ⑤「경제적 학대: 양호자 혹은 고령자의 친족이 해당고령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 그 외 고령자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학대: 신체적폭력 ■ 심리적학대: 심리적 폭력, 큰소리로 소리 치며, 위협함, 무시 등 ■ 경제적학대: 요개호자의 금품(연금, 현금, 부동산등)의 착취 ■ 성적학대: 요개호자에 성적폭력과 성희롱 ■ 방임: 식사제공, 입욕의 태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고령자학대의 문제를 유기, 가정 내 폭력 및 노인차별로서 파악해왔던 것을 독립적인 사회문제로서 파악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학대에방 및 대책에 대한 국가, 지자체 및 국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고령자학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학대의 범위를 나타내는 총체적 개념이 제시되고 않았으며, 5개의 가해행위를 통해 학대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渡部2008; 萩原2009). 「현저한 학대와 장시간의 방치」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애매하며 추상적임. ■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等(2007), 大和田(2007), 橋本(2007), 萩原(2009), 安田(2011)의 연구에서 인용.
難波等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개호는 고령자의 심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원조이기 때문에 결과로서 고령자의 QOL을 저하시키는 개호행위. ■ 고령자학대는 고령자와 개호자간에 이루어지는 상해·부조리한 구속, 협박, 품성을 위협하는 언동, 개호의 태만, 방기를 뜻하며, 의도와 관계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개호를 함으로서 고령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 	기술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를 부적절한 개호에 대한 결과로서 고령자의 QOL을 저하시키는 개호행위라고 하고 있지만 정의의 범위가 넓고 구체적으로 어떤 한 것을 학대행위로 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학대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等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학대방지법의 정의, 분류를 이용. ■ 신체구속을 학대유형에 포함시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학대 ■ 개호·돌봄의 방기 ■ 방정적학대 ■ 심리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긴급한 상황 이외의 신체구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 제정 이후, 고령자학대 방지법의 정의(분류)에 「긴급한 상황 이외의 구속」을 추가하고, 전국규모의 고령자 학대 실태조사를 실시. 학대에방은 학대행위만에 특화된 대처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조직적인 대처를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표 1> 일본의 고령자학대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자학대 정의(표1의 계속)

연구자	학대정의	학대분류	정의의 특징
杉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은 고령자를 배제하는 구조. 학대는 배제하는 행위. Hudson (1991)에 따르면 고령자를 둘러싼 폭력에는 부적절한 대응 (Elder mistreatment), 자학행위, 타인에 의한 범죄가 존재(杉井, 2007의 재인용). 	기술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 학대, 부적절한 대응의 관계에 대해 설명함.
渡部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use를 법적인 카테고리로는 한편 mistreatment는 과학적인 관심에 근거한 행위와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포함하는 말로 칭하고 있음. abuse와 neglect를 포괄해서 elder mistreatment로 칭함. abuse는 신체적·정신적학대로 한정하고, 방임과 착취가 포함되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용어로서 mistreatment를 이용하고 있음. 	기술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개념으로 부적절한 개호를 제안함. 寝たきり予防研究会(2002)의 정의와 동일한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염려됨.
萩原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는 인권침해행위이고 범죄이다. 기존의 법률의 학대분류에 인격적 학대를 추가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개호·돌봄의 방기 심리적학대 경제적학대 인격적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를 인권침해행위로 포괄적인 시점에서 분석함. 고령자의 행동제한, 자유권의 침해를 포함한 인격적 학대의 개념을 제시함. 寝たきり予防研究会(2002), 渡部(2008)의 정의와 동일하게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함. 학대방지법의 5가지 학대행위에 인격적학대를 추가.
加賀谷等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학대방지법의 정의를 인용 광의의 고령자학대는 고령자가 타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케어에 의해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를 뜻함. 생명, 건강, 생활이 손상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 학대 비의도적 학대 신체구속 그레이존(gray zone)에 있는 부적절한 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방지법의 학대정의에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포함시킴.
武田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처우는 학대의 상위개념이고, 다양한 생활장으로 사회적 자립이 손상된 고령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생활원조가 부적합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학대, 성적폭력에 의한 학대, 심리적 장애를 가하는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의도적 방임, 무의도적 방임 그 외: 고령자의 존엄행위, 판단이 어려운 모호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학대 판단이 어려운(곤란한) 행위를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추가함 학대방지법의 5가지 학대행위에 그 외의 유형을 추가함. 방임을 의도적 무의도적으로 분류함.
野村 (2011)	<p>자기방임은 고령자가 통상 혼자서 생활하는데 당연히 해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혹은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심신의 안전, 건강이 위협받는 상태에 있는 것.</p>	기술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방임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
中村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는 가해자의 명확한 도덕적 범죄행위이며 회피 가능한 손상 혹은 신체적·정신적 악화, 신체·지적·행위·행동의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부적절한 케어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의미 외에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와 상대방이 받는 피해와 감정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학대 심리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그 외: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이외의 그레이존이라는 용어를 통해 폭넓게 학대를 파악함. 고령자 본위의 시점으로부터 고령자에게 주는 모든 위해를 고령자학대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시점을 학대개념구성의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坂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cro정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의 학대정의를 말함. micro정의: 전문직이 개인마다 가지 않는 고령자학대의 정의임. 개인이 지금까지 얻은 정보·경험을 근거로 어떤 현상을 특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판단. 	기술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의 학대와 실천현장에서 해석되는 학대의 정의를 구분한 점이 특징적임.

V . 발전적인 고령자학대 정의를 위한 제언

안정적인 고령자학대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학대 정의의 내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령자학대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 일본의 문헌에 대해 시스템아틱 리뷰를 행했다. 그 결과,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에 몇 가지 특징이 존재했다.

첫째, 고령자학대 정의는 추상적이며 연구자마다 정의의 내용과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했다. 특히 2006년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정해진 이후에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학대정의와 분류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왜 연구자들은 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각기 서로 다른 학대정의와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고령자학대방지법에 규정된 학대정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학대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따라서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의와 분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Decalmer, 1993). 또 학대방지법의 학대 정의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학대행위와 인권침해행위에 적절히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전문가의 학술적 배경과 지식이 정의의 내용 및 특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부적절한 케어와 인권침해행위 등을 고령자학대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학대 정의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었다. 특히 2006년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고령자학대의 정의에 학대와 의미가 유사한 「부적절한 케어, 부적절한 처우」라고 하는 용어사용이 증가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적절한 케어, 학대에 준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대의 개념·용어가 필요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부적절한 케어의 개념을 고령자학대로 칭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학대의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Decalmer et al., 1993 ; 中村, 2012).

한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대는 그것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大塩, 1997; 山口, 1997; 河野, 2008). 그 때문에 정의의 구성개념은 특수한 의미를 지닌 학대행위(예를 들어,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등)에서 고령자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과제 혹은 고령자에게 있어 중요한 생활을 골격으로 하는 보다 생활과 밀접한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존의 고령자학대 정의는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고령자의 입장이나 인식을 반영하지 않았고 연구자에 의해 이론적으로 구성된 정의에 불과하다. 한편, 고령자학대라고 하는 것은 고령자와 개호자(介護者)의 상호관계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우국희, 1999) 무엇보다도 고령자와 개호자의 학대인식과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개호자가 행한 학대행위는 학대라고 하는 사실보다 그 동안 열심히 개호(介護)서비스를 제공해 온 양호자 측의 사정을 우선시하기 쉽다(東京都福祉保健局, 2013). 이처럼 고령자가 인식하는 학대와 양호자가 인식하는 학대의 내용 및 정의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자 본인과 개호자의 학대인식을 명확히 하는 조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증적인 학대정의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은 물론, 기존의 선행연구 조차도 고령자학대 정의에 시설 내 학대의 특징과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학대방지법은 시설 내 학대와 가정 내 학대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학대발생 비율을 가정 내와 시설 내로 구분하기 위한 명목상의 구분(발생장소에 의한 구분)에 불과하다⁷⁾. 예를 들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령자 학대에는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된 중대한 학대사건 뿐만아니라 입소자의 자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집단 규칙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가정 내 학대와 그 특징 및 양상(様子)이 다르다(田中, 2005). 이와 같은 현상은 은폐되기 쉬운 시설환경이 더해져 가정 내 학대보다 빈번히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레벨의 고령자학대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과제들을 토대로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의 발전적 방향성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예방의 관점에서 고령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회복지적 시점을 반영한 고령자학대에 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자들을 학대방지법의 학대정의를 학대예방 및 개입을 위한 정의로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존엄유지를 위해서 비교적 발생이 용이(用意)한 심리적 학대 및 방임, 더 나아가 고령자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케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바 있다(萩原, 2009; 武田, 2010).

7) 고령자 학대를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 및 개호시설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학대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대의 외재적 개념 및 유형에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종류만 다를 뿐 5가지 학대유형과 그 외재적 개념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가정 내 학대, 시설 내 학대모두 신체적 학대를 고령자의 신체에 외상을 가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폭행을 하는 것, 방임을 고령자를 쇠약하게 하는 현저한 감식 혹은 장시간의 방치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내용면에서 특징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厚生労働省, 「高齢者虐待の防止, 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http://aw.e-gov.go.jp/htmldata/H17/H17HO124.html>.)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上記)의 사회복지적 측면의 시점을 반영한 학대의 재정의를 위해 고령자 학대를 “고령자의 중요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고령자의 심신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처 입히는 행위”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또 법률상의 고령자학대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대에 유사한 행위로 준학대(準虐待)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학대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케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任貞美, 2014). 프라이버시의 침해, 규격화된 생활규칙,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결정 배제는 국제연합원칙(國際連合原則)에서 제시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井上, 2000), 인권침해는 곧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로 고령자 학대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학대에 준하는 부적절한 행위인 것이다. 반면 필자가 제기한 고령자학대의 정의도 이론적인 개념정의에 불가하고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론적 개념정의에서 벗어나 고령자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와 개호(介護)종사자의 인식을 근거로 학대의 구체적 개념을 추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대에 대한 사실과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사 학대 행위를 포함한 고령자학대 정의를 실천적으로 재구성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불가피하다.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고령자와 개호자가 고령자 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개념으로 구조화 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고령자학대를 재정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고령자 학대 정의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학대정의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사정하고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의 발전적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검토대상이 된 문헌이 일본 국내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시스템atic 리뷰만으로는 모든 정의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해외의 고령자학대 연구문헌을 포함해 학대정의의 내용, 특징 및 발전적 과제 등을 각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한국 문헌

- 이소희(1988)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정의, 범주, 기준설정을 위한 탐색」 『동광』 85, 19-41.
- 우국희(1999) 「노인학대 개념정립을 위한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6, 183-212.

일본 문헌

- 萩原清子 (2001) 「高齢者虐待はなぜ起こる」 『訪問看護と介護』 6(5), 医学書院. *
- 萩原清子 (2009) 「あいまい概念としての『高齢者虐待』とその対応——虐待の定義と虐待の判断基準の再構築に向けて」 『関東学院大学文学部紀要』 117, 関東学院大学人文学会. *
- 橋本久子 (2007) 「高齢者虐待の定義と援助方針」 『社会関係研究』 12(1), 熊本学園大学. *
- 井上英夫 (2000) 「高齢者、「障害者」の人権と日本の課題——国際高齢者年を契機に」 『早稲田法学』 75(3), 早稲田大学法学会 .
- 金子善彦 (1987) 『老人虐待』 星和書店.
- 金子善彦・澤井博司・立川功・ほか (2000) 「医師に対する高齢者虐待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から」 『老年精神医学雑誌』 11(8), ワールドプランニング. *
- 加賀谷真紀・大和田猛 (2010)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における高齢者虐待防止研修ニーズの実態と課題——青森県内の特別養護老人ホーム職員のニーズ調査結果を手掛かりに」 『青森県立保健大学雑誌』 11, 青森県立保健大学研究推進・知的財産センター研究開発科雑誌編集専門部会. *
- 加藤悦子 (2000) 「高齢者虐待の定義をめぐる議論——抜け落ちている視点」 『日本福祉大学大学院社会福祉学研究科研究論集』 (13), 日本福祉大学大学院社会福祉学研究科研究論集編集委員会. *
- 河野正輝 (2008) 「高齢者虐待防止法見直しの論点——法律学者の立場から」 『高齢者虐待防止研究』 1(1), 日本高齢者虐待防止学会. *
- 厚生労働省 (2013) 「平成 24 年度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対応状況等に関する調査結果」 (<http://www.mhlw.go.jp/stf/houdou/0000033460.html>, 2014.12.16.).
- 任貞美 (2014) 「介護職員の虐待認識に基づいた高齢者虐待定義の再構築への試み——『準虐待』の構造と特徴に着目して」 『社会福祉学』 54(4), 一般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学会 .
- 中村京子 (2012) 「わが国の高齢者虐待防止法の『虐待』定義に関する一考察」 『社会関係研究』 18(1), 熊本学園大学. *

- 難波貴代・北山秋雄 (2006) 「共依存関係にもとづく高齢者虐待への看護介入」『日本保健福祉学会誌』12(2), 日本保健福祉学会. *
- 寝たきり予防研究会 (2002) 『高齢者虐待——専門職が出会った虐待・放任』北大路書房.
-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 認知症介護研究・研修東京センター, 認知症介護研究・研修大府センター (2008) 『施設・事業所における高齢者虐待防止の支援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調査報告書』平成19年度老人保健事業報告書.
- 野村祥平 (2011) 「セルフ・ネグレクトの状態にある高齢者への予防・支援の法制化に関する考察——高齢者権利擁護法の成立に向けた課題」『高齢者虐待防止研究』7(1), 日本高齢者虐待防止学会. *
- 大木秀一 (2013) 『文献レビューのきほん』医歯薬出版.
- 大塩まゆみ (1997) 「高齢者虐待・放任の概念についての小論——その予防に向けて」『社会福祉研究』70, 鉄道弘済会社会福祉部. *
- 大和田猛 (2007) 「施設内における高齢者虐待防止のための基礎的研究——『青森県高齢者虐待および障害者虐待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の分析を通して」『高齢者虐待防止研究』3(1), 日本高齢者虐待防止学会. *
- 坂田伸子 (2001) 「日本の高齢者虐待調査における定義・分類の一考察」『東洋大学大学院紀要』38, 東洋大学大学院. *
- 坂本陽亮 (2012) 「高齢者虐待をめぐる専門職のミクロな定義——専門職間での差異・統一方法に焦点を当てて」『高齢者虐待防止研究』8(1), 日本高齢者虐待防止学会. *
- 杉井潤子 (2007) 「なぜ高齢者を差別し虐待するのか」『老年社会科学』28(4), 日本老年社会学会.*
- 高崎絹子・佐々木明子・谷口好美 (1995a) 「老人虐待の概念化と在宅ケアの課題——日本の特徴と支援活動の方向」『保健婦雑誌』51(7), 医学書院. *
- 高崎絹子・佐々木明子・谷口好美・ほか (1995b) 「老人の虐待と支援に関する研究[1]——埼玉県市町村保健婦に対する実態調査から」保健婦雑誌, 51(7), 医学書院. *
- 高崎絹子 (1996) 『老人虐待と支援に関する研究——埼玉県市町村保健婦に対する実態調査から』, 東京医科歯科大学医学部保健衛生学科老人看護学老人虐待研究プロジェクト.
- 武田卓也 (2010) 「『不適切な処遇』の概念枠組みに関する基礎的研究」『桃山学院大学社会学論集』, 43(2), 桃山学院大学. *
- 田中荘司 (1994) 『高齢者の福祉施設における人間関係の調整に関わる総合的研究』高齢者処遇研究会.
- 田中荘司 (1995) 「老人虐待の調査実態からみえてきたもの」『保健婦雑誌』51(7), 医学書院. *

- 田中荘司 (1998) 『在宅・施設における高齢者及び障害者の虐待に関する意識と実態調査』 高齢者処遇研究会.
- 田中荘司 (2005) 「高齢者虐待問題研究の歴史と展望」『老年精神医学雑誌』 16(2), ワールドプランニング.
- 谷口好美 (2000) 「高齢者虐待の現状と対策」『保健の科学』42(3), 杏林書院. *
- 東京都福祉保健局 (2013) 『東京都高齢者権利擁護推進事業高齢者虐待事例分析検討委員会報告書』 東京都福祉保健局.
- 筒井孝子・東野定律 (2002) 「わが国の高齢者虐待研究における『虐待』と定義と今後の課題——文献的考察」『保健医療科学』 51(3), 国立保健医療科学院. *
- 上村典子・内藤和美・岩崎衣世・ほか (2002) 「高齢者虐待に関する研究動向」『群馬パース看護短期大学紀要』 4(1), 群馬パース看護短期大学. *
- 上村典子・内藤和美・桜井智子・ほか (2003) 「日本で行われた高齢者虐待の実態調査研究の検証」『群馬パース学園短期大学紀要』 5(1), 群馬パース看護短期大学. *
- 臼井キミカ・黒田研二 (1999) 「在宅での高齢者虐待をもたらす要因について——諸外国および日本における研究のレビュー」『社会問題研究』 48(2), 大阪府立大学社会福祉学部. *
- 渡部克哉 (2008) 「高齢者虐待の定義をめぐって——国際機関, 英米, そして日本」『社会学研論集』 12, 早稲田大学大学院 社会科学研究科. *
- 山田祐子 (2008) 「高齢者虐待の実態調査から読み取れること——特集高齢者虐待と虐待防止」『老年精神医学雑誌』 19(12), ワールドプランニング.
- 山口光治 (1997) 「わが国の在宅高齢者虐待に関するソーシャルワーク——援助高齢者虐待の概念整理を中心に」『ソーシャルワーク研究』 22(4), 相川書房. *
- 安部幸志 (1999) 「高齢者への不適切なケアの研究——方法論的考察」『大阪大学臨床老年行動学年報』 4, 大阪大学人間科学部臨床老年行動学研究室. *
- 安田伸行 (2011) 「高齢者施設における心理的虐待の定義に関する限界と課題——文献レビューをととして」『社会福祉学研究』 (6), 日本福祉大学大学院社会福祉学研究科. *

영어 문헌

- Decalmer, Peter and Glendenning, Frank (1993) “The Mistreatment of Elderly People” Sage Publications. (=1998, 田端光美・杉岡直人監訳 『高齢者虐待——発見・予防のために』 ミネルヴァ書房.)
- James, K. and MacKinnon, L. (2010) “The Tip of the Iceberg: A Framework for Identifying Non-Physical Abuse in Couple and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22(2),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Kosberg, J. I., Lowenstein, A., Garcia, J. L., et al. (2003) “Study of Elder Abuse

Within Diverse Cultur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5(3/4),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Bonnie, Richard J. and Wallace, Robert B. eds. (2003) “Elder Mistreatment: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in an Aging America”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8, 多々良夫監訳『高齢者虐待の研究——虐待, 네그レクト, 究明의
ための指針と課題』明石書店.)

Tatara, T (1995) “Elder Abuse”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th e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Wolf, R. S. and Pillemer, K. A. (1989) “Helping Elderly Victims: The Reality of
Elder Abuse”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York.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A Global Response to Elder Abuse and Neglect:
Building Primary Health Care Capacity to Deal with the Problem
Worldwide: Main Report”

(www.who.int/ageing/publications/ELDER_DocAugust08.pdf, 2014.12.14.).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システマティックレビュー(systematic review)の方法を利用して、現在まで論議されている高齢者虐待の定義に関する内容と特徴を精密に検討し、より発展的な虐待定義の課題を提案することである。研究の結果は次のようである。第1に高齢者虐待の定義が抽象的であり、かつ研究者ごとに多様な定義と用語を使用している。とりわけ虐待防止法が定まった以降にも研究者ごとに異なる定義と分類を使用していた。第2に、不適切なケアや人権侵害行為等を高齢者虐待として捉えようとする動きが現れ、虐待定義の内容と範囲が拡張されている。第3に、既存の定義は虐待の被害者になる高齢者の立場や視点を反映せず、研究者によって構成された理論的定義を用いている。第4に、虐待防止法はもとより既存の先行研究すら、虐待定義に施設内虐待の特徴と環境を反映していない。

このような研究結果をもとに、虐待予防の観点から高齢者に最善の利益を与えられる社会福祉的視点に基づいた虐待定義の再構築が必要であること。高齢者虐待防止法では対応しにくい虐待に類似する人権侵害行為、すなわち準虐待を高齢者虐待定義に含めて再定義し構造化するための実証研究を行う必要があること、を提言できる。

キーワード：高齢者虐待研究、高齢者虐待の定義、システマティックレビュー

투 고 일 : 2015. 2. 28
심 사 일 : 2015. 3. 14
게재확정일 : 2015. 4. 4